

2021년 9월

2022년 세법개정안 소개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은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대부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건의되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관세청과의 협의 끝에 이전 개정안을 보완하여 재추진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관세 분야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법 §35②)

수입 화주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수정수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제한이 사실상 해소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납세자가 관세 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i) 관세법에 따라 벌칙(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ii)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향후 세관의 관세심사(범칙조사 등 제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0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제재 및 혜택

(1)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세법 §277)

현행 관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세관장이 30일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제출된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최대 3억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42의2)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CVA")는 신청일부터 결과 통지일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심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잠정신고·확정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은 납세의무자가 ACVA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사전심사 신청 이후)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성실신고 이행 수단

(1)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관세령 §65)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국 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여 부과하므로,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공급자를 확인해야만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수입함에도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 세율이 명확하지 않아 세액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고세율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당 과소신고납부한 세액 보정 시 가산세 면제 혜택 제한 (관세법 §38의2)

보정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 이내에 부족세액을 세관장에게 보정 신청하는 경우, 기간이자에 해당하는 보정이지만 납부하고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 조기세액확정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보정 혜택을 제한하고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혜택정지 법령화 (관세법 §255의2③)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령화 하기 위하여 AEO 업체가 자율평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대상 선별 제외 등 AEO 업체에게 부여되는 통관절차 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납세자 부담 완화

(1)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연 9.125%) 였던 것을 1일 0.019%~0.022%(연6.94%~8.03%) 수준에서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시중 금리 추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가산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Contacts

Young-Mo Lee
Partner
+82-2-3781-3140
youngmo.lee@pwc.com

Seong-II Kwon
Managing Director
+82-2-3781-0178
seongil.kwon@pwc.com

Jung-Hwan Paek
Director
+82-2-709-4089
jung-hwan.paek@pwc.com

Jung-wook Seo
Managing Director
+82-2-709-8351
jungwook.seo@pwc.com

PwC관세법인 뉴스레터는 PwC관세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PwC관세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PwC관세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